이사회 규정

주식회사 이노션

이사회 규정

2015년 3월 23일 制定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4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의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회사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회장을 역임한 분에 대하여 회사의 대외활동 및 경영에 대한 조언을 위해 명예회장 또는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에 관하여는 정관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회 의

제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분기단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를 따른다.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이사회 의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상법상의 의결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승인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7. 신주의 발행

8. 사채의 모집

9. 준비금의 자본전입

10.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이사의 영업 및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12. 중간배당

1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그 취소

15.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②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1.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 채무의 보증,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 신규투자계획

5. 해외증권의 발행

6.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7. 자기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그 특수관계인과 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11.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2.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3.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 · 개정 및 폐지 등

14.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승인

15.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③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④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2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 (긴급집행)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 집행한 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이사회를 소집 및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4조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경영진)

정관 제34조의4에 의거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

1. 경영진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영진은 회장, 부회장, (상임)고문,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로 구분하며 회장, 부회장, (상임)고문, 사장 및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라 칭하고 경영진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있다.
3. 경영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최고경영자가 정한다.
4. 각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5. 경영진의 보수, 퇴직금 및 상여금과 업무상 필요한 제경비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현저히 기여한 경영진에 대한 별도의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경영진은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사에 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또는 경영진이 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이사 또는 경영진에 대하여 이사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업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한 이사회의 조사 결과 위법, 부당사실이 확인되면, 이사회는 그 보통결의로서 해당 업무의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의 임무)

① 이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청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 지원)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지원팀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대표이사 위임사항

이사회규정 제14조에 의거 다음의 각 사항은 업무총괄을 담당하는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다.

구분	내 용	비고
자금운영	1. 운영 및 설비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건별 자기자본 100분의 20이하의 장, 단기 자금차입 (단, 동일투자자금으로 500억원 이상 추가할 시는 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자금의 운용을 위한 예금, 투자유가증권취득, 매각업무 3. 자금조달을 위한 여신한도 설정(지급보증 포함) 4. 수출입업무 무역금융 및 지급보증 회전한도 설정 5. 어음할인 및 받을어음 및 매출채권 매각(팩토링) 6. 기 승인된 투자사업 또는 PROJECT 관련한 소요자금의 차입 및 지급보증 7. 관계회사를 포함한 타인에 대한 건별 500억원 이하로서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의 채무보증 8. 해외 자회사에 대한 모든 금전의 대여, 출자, 보증 9. 기존 차입 및 보증에 대한 기간 연장 10. 관계회사를 포함한 타인에 대한 100억원 이하의 금전등 대여행위 11. 환율 및 금리변동위험의 헷지를 위한 파생상품 약정체결 (단, 매매목적의 거래는 제외)	-은행예금, 채권, 주식 등 - D/A,D/F 어음할인, 입찰, 계약이행, 선수금, 하자보증, 수·출입 L/C,F/X 등
투자	12. 자산총액의 10/100미만의 고정자산의 취득, 처분시 13. 자기자본의 10/100미만의 타법인 출자, 처분결정시 (해외투자포함) 14. 자기자본의 20/100미만의 신규 투자시	
기타	15. 자산임대차 계약체결 16. 일반거래에 수반된 전도자금 지원 및 외상거래 17. 회사의 영업목적에 포함된 모든 상거래관련 계약체결 18. 이사 및 경영진의 보수에 관한 사항(임원예우규정) 19. 기타 상법,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일상 업무집행에 관련된 사항	